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셀레니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동 기준은 셀레니언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보수에 적용된다.

1.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수행과 관련된 운용보수
2. 상기 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 **제3조(수수료 부과 원칙)**

1.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은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수수료 부과 시 상품의 성격,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수수료 등”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나. 판매보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다. 신탁업자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판매수수료: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 수수료와 후취판매 수수료로 구분한다.
  - 나. 환매수수료: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5조(수수료 부과 기준)**

수수료 부과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상품개발에 투입된 시간, 인력 및 비용
2.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3. 시장에 출시된 경쟁상품 대비 상품의 독창성 및 희소성
4. 상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운용의 전문성
5. 상품 출시 이후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 인력 및 비용
6. 해당 상품에 대해 집합투자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
7. 판매회사별 예상판매 규모 및 판매촉진 계획
8. 사모 간접투자기구 수익자 및 일임 고객의 투자규모 및 투자예상 기간

### **제6조(수수료 결정 절차)**

1. 회사는 신상품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신상품개발과 관련한 제반 사안을 관리하기 위한 상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수료의 부과에 대해 심의 및 의결 한다.
2. 위원회에서 수수료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제7조(공시)**

동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 사항)**

상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범위의 변경, 내부 업무 절차 또는 조직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